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여객선 접안시설 안전관리 강화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98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여객선 접안시설 안전관리 강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7. 18.

3. 회 부 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기항지에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여객선 접안시설 축조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축조된 접안시설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여객선 접안시설 안전관리 강화

가.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u>추조</u> 등) (생략)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u>추조 및 안전조치</u>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 최근 여객선에 선적 대기 중이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있었고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24건의 해상 추락사고와 이로 인한 7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41건의 안전사고가 있음.

[해상 추락사고 발생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7월	합계
사건 발생건수	50건	53건	39건	41건	23건	18건	224건
사망자수	15명	17명	12명	8명	10명	9명	71명

※ 해양경찰청

그런데 현행법 제44조의2를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등의 기항지에 접안시설¹⁾을 축조하도록 규정²⁾하고 있으나, 시설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1) [접안시설 종류 및 정의] ※ 참고 1 [접안시설 종류 및 개수]

접안시설 종류	정의
경사물양장	해안에서 바다쪽으로 경사면을 갖도록 콘크리트 축조한 접안시설
계단식 물양장	해안에서 바다쪽으로 계단식으로 콘크리트 축조한 접안시설
부잔교	조석 고저의 차이가 심한 곳에서 조위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함을 연결하여 부두의 기능을 갖도록 한 부체
안벽	해안선을 따라 평행방향으로 축조된 접안시설
부속선	여객선이 접안할 수 없는 기항지에서 여객선과 육지(기항지)간 여객을 중개 수송하는 선박으로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한 선박

2) 「해운법」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접안시설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여객선 기항지의 접안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 등에 따른 여객선 기항지 328개소 중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시설은 21개소이고, 나머지 307개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³⁾임.

따라서 현재 항만별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는 관리주체와 개정안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주체가(해양수산부장관)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기항지 접안시설 관리 현황]

합계		항만(35개소)		어 항(128개소)			소규모 항포구 ⁴⁾
		무역항	연안항	국가	지방	어촌정주	
328개소		16	19	34	42	52	165
관리 주체	국가(21개)	11	10	-	-	-	-
	<u>지방(307개)</u>	<u>5</u>	<u>9</u>	<u>34</u>	<u>42</u>	<u>52</u>	<u>165</u>
예산지원 방식		국가관리 항만: 국비 100% (단, 지방관리 항만은 권한·사무 지방이양으로 국비지원 종료) (교특)			시·군·구 (권한·사무 지방이양으로 국비지원 종료)		시·군·구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재정리

3) 여객선 기항지는 총 328개소로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에 35개소,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 구역에 128개소, 그 외 소규모 항포구(「항만법」과 「어촌·어항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포구)에 165개소인데, 이 중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시설은 국가관리무역항 11개소와 국가관리연안항 10개소 등 총 21개소임.

4) 항만·어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시·군·구 소관이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통해 선정된 곳에 접안시설 개선 지원

□ 관계부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도 여객선뿐만 아니라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 예방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접안시설 안전조치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의 지원 대책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안 제44조의2제3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접안시설의 안전성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항만시설은 「항만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점, 어항시설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안전점검, 사실조사 등을 수행한다는 점, 소규모 항포구는 지자체가 관리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여객선 접안시설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19

참고 1

접안시설 종류 및 개수

접안시설 종류	사진	개수
경사물양장		277
계단식 물양장		2
부잔교		47

접안시설 종류	사진	개수
안벽		33
부속선		2